

# 산내중학교 학교생활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산내중학교 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 (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생활

제6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1.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4.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5.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6.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8. 다른 학생과 교제 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10. 서로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3.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4.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6.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 제9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

1.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제10조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5.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6.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7.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8.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9.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10.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제11조 (휴식시간)

1.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4.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5.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6.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7.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8.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9.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제13조 (용모)

1.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3.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다.
4.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5. 용의 복장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 제14조 (정보통신 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3.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제15조 (전자기기 사용)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3.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4. 시험기간 중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5.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제16조 (이성교제)

1. 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이성교제는 허용한다.
2.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3.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4.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진로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5.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6. 순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순결교육과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치활동)**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6.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8조 (조퇴 등)**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부재시 부담임 교사와 인성인권부장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제19조 (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출결)**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기간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98.4.15. 자퇴,’ 99.3.20. 편입의 경우, 원적교의 ‘98.3.2~’ 98.3.19 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 98.4.15 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활동기간
  -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등교를 했을 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시간의 수업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8.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9.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10.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1.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가 되면 결석 1일로 처리한다.

**제21조 (상고)** 경·조사로 인한 출결 사항 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를 근거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제시된 기간은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제22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2. 무단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3. 기타 결석

가.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9. 나. 2)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자.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3조 (유급)** 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다음과 같다.

1. 결석일수가 당해년도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 제24조 (기타)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2.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3.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4.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 제25조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학교폭력 건에 관한 일체의 심의·의결은 학교폭력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2. 학교위원회는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위원장,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인성인권부장교사를 주무로** 하며 인성인권부가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제26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1.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
2. 학생 징계에 관한 심의(특별교육 및 선도처분 대상 건에 한함)
3. 기타 학생선도에 관한 심의(위원 2/3 이상의 심의 요구사안)
4.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7조 (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 (진술)

1.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담임교사 및 관계 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술서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 (재심)**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기록)** 협의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31조 (학교위원회 회의)** 특별한 사안 발생 시 학교위원회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2조 (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4조 (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35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36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7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8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조언)**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 (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

- 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 (주의)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42조 (체벌금지)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43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육·훈계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44조 (훈육)**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4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7.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가. 제4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라.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10.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45조 (훈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9조에 따른 조언, 제40조에 따른 상담, 제4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4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나.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다.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라. 성찰하는 글쓰기
  - 마. 훼손된 시설·물품, 오염 등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바.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사.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4.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47조 (전자기기 사용 지도)

1.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2. 제15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교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제48조 (징계의 원칙)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 1회 또는 수회 호출 지도
2. 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특별교육이수 : 10일 내외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5.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6. 전학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7.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 제50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

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전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조치한다.

**제51조 (징계의 세부사항)** 징계 종류 및 기간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의
  - 가. 주의는 사안 발생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에 해당교사나 담임교사 혹은 업무관련교사(학생부장교사, 진로상담부장교사)가 지도함을 말한다.
2. 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 나. 학교 행사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 다. 교재·교구 정비
  - 라.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등 봉사활동에 적합한 일
3. 사회봉사는 징계기간동안 매일 등교하여 출석점검을 받고 협조를 의뢰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귀교하여 지도 받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특별교육이수는 징계대상학생이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치료받기 위해 입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등교하여 출석점검을 받고 해당 교육 이수(치료)후 귀교하여 지도 받는 것을 말한다. 특별교육기간은 10일 내외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시간에 맞추어 교육 이수 및 치료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마.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바.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 확인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사.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상담과 교육을 받는다.
    - 위기학생 상담·교육 의뢰(학교) → 학생 심리·정서 진단(Wee) → 학생·학부모 상담·치료(Wee) → 전문기관 연계 교육결과 송부(Wee) → 추수상담 학교적응 지원(학교)
  - 자.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매일 동행하여 이수에 임하도록 한다.
5. 출석정지
- 가. 부모 책임 하에 가정학습을 실시한다.
  - 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와 가정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52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1. 학년 및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2.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3.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 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제53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1.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3.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 제54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5조 (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제56조 (징계의 기준)

1.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북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 징계 내용과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 제5장 기 타

#### 제5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58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9조 (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60조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 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제6장 포 상

제62조 (목적) 산내중학교 학생의 건전한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학생 생활전반에 걸쳐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 (대상) 포상 대상은 산내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4조 (포상의 기록 보존) 이 규정에 의한 포상 사항의 기록, 보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여 그 출력물로 대신한다.

제65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교내·외 징계를 받은 학생은 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학교장상 : 본교에 1년 이상 재학생 중인 자로 학년말 내신성적 산출자료(2학기 2차고사 포함)에 의하여 산출된 졸업예정자 석차연명부(작성일

- : 12월말)에서 1위인 자로 생활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교과우수상 : 학기별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학업성취도 석차가 1등이면서 평어가 “수(A)인 자를 매 학기말에 시상한다.(단, 전입생의 경우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는 제외한다.)
- 3. 1년 개근상 : 1년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 4. 1년 정근상 : 1개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자 (단,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하며 지각, 조퇴, 결과는 1일 1회에 한한다.)
- 5. 3년 개근상 : 3개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 6. 3년 정근상 : 3개년간 3일 미만의 결석자. (단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하며 지각, 조퇴, 결과는 1일 1회에 한한다.)
- 7. 선행상 : 급우간의 친목에 솔선수범하고 이웃돕기, 습득을 찾아주기 등 선행 실적이 뚜렷한 자
- 8. 효행상 : 부모에게 효행한 실적이 뚜렷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가 특시 양호한 자.
- 9. 봉사상 : 대·내외적으로 봉사한 실적이 뚜렷한 자.
- 10. 공로상 :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자 중 학교에 모범적인 활동을 한 자로 학교장이 그 공로를 인정한 자(학생회장, 실장 등)
- 11. 기능상 : 각종 대회 중 도 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시 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12. 기타 교외상(졸업식)
  - 가. 상을 수여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
  - 나. 상 수여를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 위 1. 항과 같이 학년말 석차연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행동 발달 상황이 양호한 자를 학교장상과 학교운영위원장상을 제외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수여한다. (단 접수순에 의한다.)

## 제7장 학생자치회

**제66조** 학생자치회의 집행기구로 학생회를 둔다.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7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8조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제69조 (효력정지)** 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70조 (관장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71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2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1인(2학년)
2. 각부의 부장 1인

**제73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생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2. 학습 도서부 : 도서와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회의 기록, 문서, 회계, 자율학습 및 기타 사항
4. 서기 : 각종 기록 및 총무부와 협의
5. 체육부 : 각종 체육행사의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제74조 (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이며 학생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다.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75조 (집행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1인으로 구성한다.
2. 기능
  - 가. 학생자치회 의결기구에서 위임된 사항
  - 나. 사업계획
  - 다.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라. 기타 중요한 의안

제76조 (회의) 집행위원회는 필요시 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인권 부장 교사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제77조 (심의)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8조 (회칙 개정) 학생회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칙의 개정은 학생자치회 의결기구 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자치회 의결기구에 회부한다.
2. 이 개정안은 학생자치회 의결기구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장 규정의 개정

#### 제79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80조 (개정안의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1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82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3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년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용 의 복 장 기 준

구 분	기 준
<b>교복 및 체육복</b>	1. 교복은 착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하되, 다만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복장은 금지된다.
<b>두발</b>	1. 두발의 길이는 자율로 한다. 2. 헤어젤, 염색, 퍼머 등의 두발의 변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머리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b>악세사리</b>	1. 목걸이, 반지, 팔찌는 허용하되 보석 종류의 고가 제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2. 피어싱은 금지한다. 3. 귀걸이는 귓볼에 붙는 큐빅 종류에 한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허용한다. 4. 시력보호용 렌즈를 제외한 미용목적의 렌즈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체육이나 실습 등 안정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b>화장, 손톱 등</b>	1. 햇빛 차단용 화장(선크림)은 허용한다. 2. 비비크림을 포함한 색조화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손톱의 투명 매니큐어는 허용한다.
<b>신발</b>	1.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엔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2. 실내화는 실내용 운동화나 슬리퍼를 착용한다.
<b>가방</b>	1.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어울리는 검소한 것으로 한다.
<b>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b>	1.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학급조회 시에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에 돌려준다. 2. 미제출하여 사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학교 및 학급규칙에 따른다.
<b>흡연</b>	1. 흡연 학생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교내·외에서 흡연 중 발견된 학생을 말한다. 2. 흡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1)1~2회(훈계): 학부모 내교 상담 2)3~4회(교내봉사 3일): 금연시술, 인성인권부 주관 금연 프로그램 이수 3)5~6회(교내봉사 5일): 금연시술, 별도 학습실에서 프로그램 수행 4)7~8회(사회봉사): 금연학교 입소 5)9회이상(특별교육): 금연학교 입소 및 학교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 이수 6)상습적 흡연: 금연클리닉 의무 이수

[제44조 2의 별표2]

징 계 내 용 및 징 계 기 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학교 봉사	사 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교사에게 불순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8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 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여 애용한 학생					
	9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11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3	경찰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14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6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1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18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1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0	수업을 거부한 학생					
	2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22	시험을 거부한 학생					
	23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24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근태	25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한 학생					
	26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27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28	정당한 사유 없이 연1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29	정당한 사유 없이 연15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30	정당한 사유 없이 연2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31	동 학기 중 무단결석 기간이 수업일수 1/3을 초과한 학생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주의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약물	32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3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34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35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폭력	36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37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38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도, 가담한 학생					
	39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40	이유 없이 상, 하급생간의 폭력을 행한 학생					
퇴폐 행위	41	도박을 한 학생					
	42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43	학생 출입 금지 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44	불량서적(음란서적)을 탐독한 학생					
	45	불량 동영상 시청한 학생					
금품	46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7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48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49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50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51	금품을 강탈한 학생					
집단	52	불량 씨클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53	허가 없이 씨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54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기타	56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57	징계 기준 외에 것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